



신생아 특별공급 신설('26.06.15.)

전용면적 85㎡ 이하 공급세대수의 10% 범위

태아·입양 포함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

※ 「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」 참조



다자녀가구
특별공급 조건 완화

3자녀 이상 ➡ 2자녀 이상

※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(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)



부부 모두 특별공급 청약 가능

예시

본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+ 배우자 생애최초 특별공급

※ 단, 부부 모두 당첨 시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 유효,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



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더라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가능

예시

혼인 신고 전 배우자 : 주택처분완료 ➡ 혼인 신고 후 청약자 : 생애최초 특별공급

※ 혼인신고 전 소유한 주택을 처분완료한 경우



평생 한 번이던 특별공급을 한 번 더

예시

혼인 신고 전 청약자 : 생애최초 특별공급 ➡ 혼인 신고 후 청약자 : 신혼부부 특별공급

※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 후 신혼부부 / 생애최초 /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 가능

※ 청약자가 혼인 전 당첨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가능 (혼인특례 : 본인 기준 1회 한정)



출산특례 : 과거 당첨이력 배제,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

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으며, '24.06.19.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

–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청약 가능

–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

※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하며, 청약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 당첨이력 존재 시 적용 불가

※ 특별공급 유형 중 다자녀가구, 신혼부부, 노부모부양, 신생아 적용 가능



전용 85㎡ 이하 주택 무주택 기준 확대

비아파트(단독주택, 다세대주택, 연립주택, 도시형 생활주택)

수도권 5억원 까지 비수도권 3억원 까지 ➡ 주택미소유 판정(공시가격 기준)

※ 해당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



청약통장 장기가입자 우대

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추천 진행 ➡ 청약통장 장기가입자 우선

※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/ 일반공급 1순위 가점제 해당사항

※ 가입기간이 같은 경우 추천의 방법으로 따르며 가점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는 추천제 대상에 포함



1순위 청약시 배우자 청약통장 합산 가능

예시

본인 청약통장 보유 12년 14점 +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 3년 3점 ➡ 17점

※ 단 배우자와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하여도 최대 17점까지만 가능